

수능 국어영역은 2022학년도 시험에서 개정 교육과정의 반영되면서 한층 더 어려워졌다. 특히 비문학 부문은 대학생,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고시급 언어능력시험과 비교해도 난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되었다. 시험의 난이도가 너무 빠르게 오른 탓에, 이전까지 쌓여 왔던 평가원의 기출문제들은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이제는 수험생들이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자 해도 어려워진 시험의 난이도에 걸맞은 학습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비기출 비문학〉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진 수능 국어영역을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기획되었다. 최고의 성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본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들의 내용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아래 세 종류의 시험의 내용을 포함한다.

- 1. PSAT 언어논리 | 짧은 지문들을 통해 개념들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연습
- 2. LEET 언어이해 | 수능 킬리지문 난이도를 약간 넘어서는 장지문
- 3. MDEET 언어추론 | 수능 킬리지문과 유사한 난이도의 장지문

〈비기출 비문학〉에서는 각 시험에서 최신 수능에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문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수능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특히 최근 수능의 형식이 '가독성이 높은 지문 + 종합적 평가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항'의 조합임을 감안하여 각 제시문의 본문 문장/단어/표현의 가독성을 높이고, 문제의 어렵고 낯선 느낌을 최대한 살려 수능과 유사하게 제시하였다.

상대평가 시험인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기출 비문학〉을 통해 경쟁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극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다.

Contents

- 1 공직적격성시험(PSAT) 언어논리 005
- 2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 005
- 3 의·치의학입문검사(M·DEET) 언어추론 005

1

공직적격성시험 PSAT

언어논리

조선의 어업협정 (2021 민간경력자 5·7급 일괄채용 PSAT)

난이도 하

비슷해 보이는 개념들의 구분!

'만동묘vs대보단' 만 대립하는 개념일까??

1883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는 “일본인이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양측은 이 조항에 적시되지 않은 지방 연해에서 일본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하기로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자국의 각 부·현에 조선해통어조합을 만들어 조선 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조선 연해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이 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 많은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복을 마구 잡는 바람에 주민들의 전복 채취량이 급감했다. 이에 제주목사는 1886년 6월에 일본인의 제주도 연해 조업을 금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했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조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어업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일본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1889년에 조일통어장정을 맺었다.

조일통어장정에는 일본인이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적시된 지방의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조업하려는 지방의 관리로부터 어업준단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업준단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었으며,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어업세를 먼저 내야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만들어 자국민의 어업준단 발급 신청을 지원하게 했다. 이후 일본은 1908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강요해 맺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한반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일본인은 대한제국 어업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제국은 이듬해에 한반도 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업법을 공포했고, 일본은 자국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일본은 1902년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없애고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은 어업법 공포 후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등의 일을 했다.

조일통상장정 vs 조일통어장정

조일통어장정 vs ‘어업에 관한 협정’

01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 ① 조선해통어조합은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업무를 보았다.
- ② 조일통어장정에는 제주도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밖에서 조선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모두 금한다는 조항이 있다.
- ③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만들어져 활동하던 당시에 어업준단을 발급받고자 하는 일본인은 어업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다.
- ④ 조일통상장정에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조직해 일본인이 한반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 ⑤ 한반도 해역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따라 조선해통어조합으로부터 어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하였다.

Comment

단어들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그것들을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세 시기가 등장했다. 첫 번째인 ‘조일통상장정’시기, 두 번째인 ‘조일통어장정’시기, 세 번째인 ‘어업에 관한 협정’시기를 구별해 보자.

헤겔의 예술론 (2015 LEET 언어이해)

난이도 상

내용과 형식

형식이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술사가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와 연관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특정 예술유파를 지칭하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다. 이 세 용어는 지역과 시간 개념을 수반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닌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매'만 있을 뿐이다. 감각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렵곳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3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

예술의 내용 vs 예술의 형식

형식>내용

형식=내용

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답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진다. 또한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을 이끌어낸다.

형식<내용

01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02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03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04 윗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Comment 지문에 사용된 문장들이 너무나 길고 난해해서 문장들을 상당히 많이 쪼개고 내용을 쳐냈다. 그런데도 어렵다. 2015LEET에서 킬러 급의 역할을 해 낸 지문이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과 **형식**을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것이다. 1~4문단에서 **내용**과 **형식**이 어떤 관계들을 이루는지에 집중해 보자.

관련 기출 • 2022학년도 수능, <변증법과 헤겔의 미학>

...(전략)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후략)

“내용 ↔ 형식”

Q.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선택지 ③에서 말하는 '대상'이란 '내용'에 해당한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형식'에 따라 구분될 뿐, '내용'에 따라 구분되지 않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옳지 않다.

해설

▷ 조선의 어업협정

1 1883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는 “일본인이 조선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당시 양측은 이 조항에 적시되지 않은 지방 연해에서 일본인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금하기로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자국의 각 부·현에 조선해통어조합을 만들어 조선 어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원으로 조선 연해에서 조업하는 일본인이 늘었는데, 특히 제주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전복을 마구 잡는 바람에 주민들의 전복 채취량이 급감했다. 이에 제주목사는 1886년 6월에 일본인의 제주도 연해 조업을 금했다. 일본은 이 조치가 조일통상장정 제41관을 위반한 것이라며 항의했고,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조업 금지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 **이후** 조선은 일본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어업 활동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게 되었으며, 일본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 1889년에 **조일통어장정을 맺었다.**

해설

- 1문단에 제시되는 ‘조일통상장정 시기’를 2문단에 나오는 ‘조일통어장정 시기’와 ‘어업에 관한 협정 시기’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 순서대로 3개를 구별해서 인식해보자.
 - 1)조일통상장정 시기
 - 2)조일통어장정 시기
 - 3)어업에 관한 협정 시기
- ‘조일통상장정’은 조항에 적시된 곳에서만 어업활동 허용하는 방식(Positive 규제 방식)이다.
- “제주도는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적시되지 않은 곳인데?!” 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애들이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제주도가 전라남도 에 포함되었다. (조일통상장정에서는 조항에 명시된 곳에서만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허용했고, 결국 조선이 일본의 항의를 받아들였으므로, 제주도가 조항에 명시된 곳 중 하나라는 것을 추론해도 좋다)

2 **조일통어장정**에는 일본인이 조일통상장정 제41관에 적시된 지방의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조업하려는 지방의 관리로부터 어업준단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업준단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었으며,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어업세를 먼저 내야 했다. **이 장정 체결 직후에 일본은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만들어** 자국민의 어업준단 발급 신청을 지원하게 했다. **이후 일본은 1908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강요해 맺었다.** 여기에는 앞으로 한반도 연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는 일본인은 대한제국 어업 법령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제국은 이듬해에 한반도 해역에서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어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업법을 공포했고, 일본은 자국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일본은 1902년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없애고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조합은 어업법 공포 후 일본인의 어업 면허 신청을 대행하는 등의 일을 했다.**

해설

-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인 ‘조일통어장정’시기, ‘어업에 관한 협정’ 시기이다. 각각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인식해 보자.
- 각 시기에 일본에 있었던 어업관련 협회를 순서대로 아래 표처럼 대응시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일통상장정	조일통어장정	어업에 관한 협정
조선해통어조합 (조선어장 정보제공)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어업준단 발급지원)	조선해수산조합 (어업면허신청 대행)

01

정답 해설

③ (O)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시기는 두 번째 시기(조일통어장정) 이다. 이 시기에 어업준단을 1년단위로 발급받으려면 어업세를 먼저 내야 했다.

오답 해설

- ① (X) 일본어부의 어업을 지원한 세 단체를 각 시기별로 인식하자. 조선해통어조합은 첫 번째 시기에 조선어장의 정보제공만을 했다.
- ④ (X) 조일통상장정이 있던 시기에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없었다.
- ⑤ (X) 조일통상장정이 있던 시기에, 조선해통어조합은 일본인들에게 조선어장에 대한 정보제공만을 했다.